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46-0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부록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부록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

부록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

1967.3.18. 토리캐년호 사고
1989.3.24. 엑슨-발데즈 호 사고
1996년, 12월 20일, 나호드카호 사고
1999년 12월 12일, 에리카 호 사고
2002년 11월 13일, 프레스티지 호 사고
1995년 7월 23일, 씨프린스 호 사고
1993년 9월 제5 금동호 사고

해양오염사고 대응매뉴얼

Ⅰ. 개요

1. 목적
2. 적용 범위
3. 관련 법규

Ⅱ. 해양오염사고 형태 및 위기 대응체계

1. 해양오염사고 형태
2. 해양오염사고의 확산
3. 위기 경보
4. 위기관리 체계
1) 국가재난 대응체계 위기관리 체계
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체계
3) 해양오염사고 시 기관별 임무
5. 충청남도의 임무 및 대응체계
1)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임무
2) 충청남도 대응체계

Ⅲ. 해양오염사고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

1. 해양오염사고 접수 및 응급조치
2. 위기 단계별 충청남도의 대응조치
1) 관심 단계
2) 주의 단계
3) 경계 단계
4) 심각 단계
3. 단계별 대응 절차
1) 해양오염사고 방제활동 흐름도
2)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단계별 대응절차
3)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상황처리 체크리스트

최근 10년 동안의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참고문헌


함께 살리 바다
희망으로 돌아오다
10th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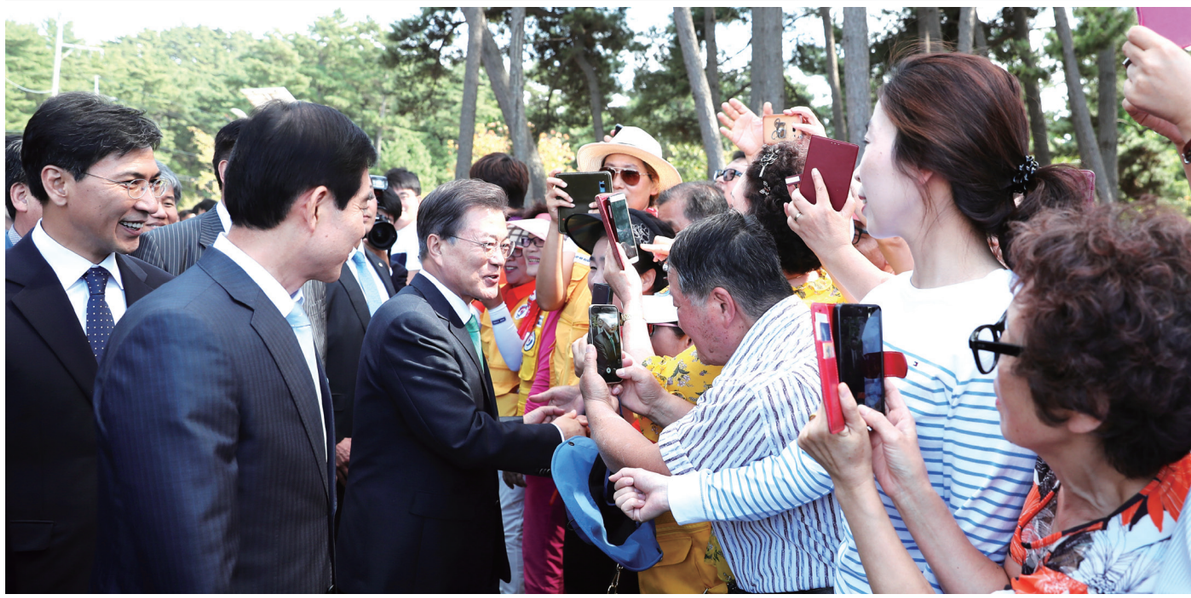




상괭이의 귀환
Return of the Finless Porpoises
The native dolphins and finless porpoises that disappeared after the oil spill returned to the Taean coastal waters in 2016. The appearance of finless porpoises that are only able to live in clean seas is evidence that our west coast ecosystem has finally cleared up. Marine life is returning to the west coast thanks to the concerted effort of the nation.


자연을사랑은
희망입니다
2019.5.15
박 말숙
기적, 희망!!!






노인의 빈손
Empty Hands of an Elder




적십자 희망나눔




안전한 바
행복한
해


VOLVO
197
EW145B




POLICE
해양경찰






고마워 그리고 기억해


관광선










고마워 그리고 기억해


전국자원봉사자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




고마워요
기억할께요


THANK YOU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나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1년 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태안군 농
명품


기름유출 사고
방제상황실
KOEM의 미래, R&D 기술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사업
상황보고서
방제선의 구조


365


해양수산부
KOEM
해양쓰레기


COMFORTABLE
CLOTHES


자원봉사
희망나무


함께 살리는 희망으로 이어요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

1967년 3월 18일, 토리캐년호 사고

① 사고 개요

1967년 3월 18일 아침 원유 12만 톤을 선적한 유조선 토리캐년호(Torrey Canyon)가 대서양의 시실리 섬 인근의 암초에 좌초하여 선체에 커다란 구멍이 나면서 대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해난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고였으며,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해양 기름 오염 사고였다.

사고 당시 토리캐년호는 1967년 2월 19일 쿠웨이트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3월 14일까지 카나리 섬에 도착해 영국의 밀포드 헤븐항에 3월 18일 도착할 예정으로, 사고 당일 오전 8시 15분경 토리캐년호는 시실리 섬을 통과하고 있었다. 암초 세븐 스톤과는 불과 30분 거리에 있던 것이다. 사실 사고 선박이 통과하고 있는 수역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많은 선박이 재난을 당하는 악명 높은 곳이었다.

토리캐년호 선장은 시실리 섬과 세븐 스톤 사이를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암초가 수면 이하로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 때 토리캐년호는 시실리 섬과 세븐 스톤 사이로 침로를 잡고 항해하고 있었다.

이 수역에는 어선들의 어로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토리캐년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침로를 변경했고, 점점 암초 세븐 스톤과 가까워지게 되고 말았다.

암초를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17노트의 속력으로 달리던 토리캐년호는 암초 세븐 스톤의 폴라즈 락(Pol1ar's Rock)에 좌초해 6개의 화물 탱크가 찢어지며 몇 주 동안 선적한 모든 기름이 유출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영국 남해안과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3만 갤런(약 11만 3천 리터)의 기름이 화물탱크로부터 유출되었고 바람과 조류에 따라 코니시 해안으로 점차 이동하며 지역의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토리 캐년 호 좌초 이후 3만 갤런의 기름이 화물 탱크에서 유출되어 인근 해역을 오염시킴에 따라 해군 함정은 유처리제를 사용해 기름을 분산시키려 했지만, 토리캐년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영국 내각은 해군항공기지에서 회의를 열고 잔존 기름을 불태워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결정, 수차례 폭탄을 투하해 기름을 소각 처리했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이 사고로 운송 중인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되어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고 영국·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염방제를 수행했다. 방제비용만으로도 몇 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오염피해금액 또한 천문학적 액수에 달했다.

그러나 오염방제비용이나 피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정부와 연안 주민들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반면 사고를 낸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거의 모두 보상받았다.

해양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영국·프랑스 정부와 연안 주민은 보상을 받지 못한 반면 사고를 일으킨 선박소유자와 선원은 대부분의 손해를 보상받았다는 점에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배상 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해양유류오염방지를 위한 협약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과 보상협약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사고 후 영향

토리캐년호 사고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해양유류오염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당시로서는 별다른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적용하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선박소유자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채택되어 각국에서 비준한 것은 「1924년 항해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국제협약」과 「1957년 항해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국제협약」이었다.

이 협약에 따라 일반채권과 함께 책임제한기금을 형성해 책임은 제한적이었고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막대한 피해에 비해 사실상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유조선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논의 결과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⑤ 시사점

사고를 통해 특히 편의치적선 등이 유류 유출 등의 재난급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국과 연안 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다. 사고 이후 선박의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의 해양오염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한 해상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의 「1954년 런던협약」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1969년 정부 간 해사자문기구 총회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이로부터 1973년 10월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또한 사고 이후 대규모 해양유류오염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기에, 유조선에 의한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손해배상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협약으로 1969년과 1969년에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 비준되었고, 이는 현 국제기금(IOPC Fund)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3월 24일, 엑슨-발데즈 호 사고

① 사고 개요

유조선 엑슨-발데즈 호는 1989년 3월 24 일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항해 도중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의 브라이 리프 위에 좌초해 11개의 화물탱크 중 8개가 손상을 입었다. 좌초 후 6시간 동안 엑슨-발데즈 호는 원유 5,300만 갤런 중 약 1,090만 갤런이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기름은 1,300마일 이상의 알래스카 해안에 영향을 미쳤고, 이 사고는 현재까지 미국 수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름유출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엑슨-발데즈 호에서 유출된 기름은 브라이 리프 남서쪽으로 470마일까지 확장되어 갔고, 약 1,300마일의 해안선이 기름에 뒤덮였다. 유출지역은 11,000평방마일이나 되었고 유출된 기름의 이동은 1989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해안선에 덮인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은 1991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방제를 위해 최대 11,000 명의 연인원과 1,400척의 선박과 85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었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방제작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4명이 사망하고 자연환경, 어업, 관광, 야생동물 등의 피해가 막심했다. 1994년 앵커리지 법원은 실제 손해에 대해 2억 8천 7백만 달러와 엑슨사의 1년 수익을 기초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civil liability)에 대해 50억 달러를 판결했다. 엑슨사는 판결에 대해 항소해 손해배상액을 40억 달러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후 다시 상소한 엑슨사에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이자를 합쳐 45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여러 번의 상소 끝에 일반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각각 5억 달러만 인정되었다.

④ 사고 후 영향

미국 국내법의 정비

엑슨-발데즈 호 사고 이후 알래스카 주지사 스티브 카우퍼는 화물을 적재한 모든 유조선은 발데즈항에서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거쳐 힌친브룩(Hinchinbrook) 입구까지 2척의 예인선이 호송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졌다. 이 계획이 1990년대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2척의 예인선 중 한 척은 길이 64미터의 호송비상선박으로 대체되었고 엑슨-발데즈호 사고 이후 미국 의회는 「1990년 유류오염 법」(OPA 1990, Oil Pollution Act, 1990)을 제정하게 된다.

1백만 갤런 이상의 유출사고를 낸 선박의 입항금지조치와 1994년 이후 인도되는 모든 유조선은 이중 선체구조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했다. 또 1995년 1월 1일 이후 2015년까지 기존의 단일선체구조의 유조선에 대한 단계적 해체를 규정하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무한배상을 규정함으로써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협약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른다.

한편 미국 정유회사들은 자구책의 하나로 부족한 방제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내 5개 지역에 3만 톤 규모 이상의 기름유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석유산업계대응기구(Petroleum Industry Response Organisation : PIRO)」를 설립했다.

「1990년 유류오염법」 제정 이후에는 기구의 명칭을 「해양유출대응협회(Marine Spill Response Corporation : MSRC)」로 개칭하고 5개의 지역센터에 방제선 16척, 기름회수기 96기, 오일펜스 91.4km 등의 방제장비를 분산해 비치하기 시작했다.

⑤ 시사점

사고 이후 미국은 책임한도 및 보상지원 시기에 한계성을 가진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과 별도로 「1990년 유류오염법(Oil Pollution Act, 1990)」을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방제작업 및 배상을 지원했다.

이 법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무한배상을 규정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대표되는 국제협약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책임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996년 12월 20일, 나호드카호 사고

① 사고 개요

1996년 12월 20일 벙커 C유 19,000톤을 적재한 선령 28년의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호드카호(13,157톤, 승선원 32명)는 중국 상해항을 출항해 러시아 페트로파브로스크항으로 항해하던 중 1997년 1월 2일 오전 2시41분경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북북동 100㎞ 공해상에서 강한 폭풍을 만났다. 선체가 선수와 선미로 2등분으로 절단되면서 선미부는 수심 2,500미터 해저에 침몰하고 선수부는 풍속 20m/s, 6m높이의 파도에 밀려 동쪽으로 5일간 표류하다가 1월 7일 후쿠이현 미구니시 해안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좌초되었다. 이 사고로 절단부 화물창의 중유(벙커 C) 약 3,700톤 정도가 유출되었고, 침몰·좌초 선체로부터 약 2,500톤 정도가 유출되었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사고 직후 일본 해상재난방지센터(MDPC)는 일본 해상보안청 및 선주 측과 함께 해상방제작업을, 일본 정부는 MDPC에 우선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지자체, 자위대에서도 보유 장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도 수십만 명이 해안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되었고, 사고 발생 5년 8개월만인 2002년 8월에 손해배상이 종결되었다. 다른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소송이 제기되었고 일본 정부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정보와 자료만을 제공하는 역할만 했다. 보상한도를 넘는 청구액을 두고 정부와 IOPC, 보험사 간의 오랫동안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2002년 5월 도쿄 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보험사가 한도액을 넘는 금액 중 30억 엔(약 289억 원)만 정부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당사자들이 여기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어민들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피해액을 산정해 청구한 것이 특징이다.

④ 사고 후 영향

러시아 선적 유조선 나호드카호 사고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 창설에 영향을 미쳤고, 추가 분담금의 20% 상한선 설정을 조건으로 내건 일본 정유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본은 2003년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게 된다.

⑤ 시사점

외국선박이 일본영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2003년 추가기금 조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 역시 추가기금협약을 수용해 현재 가입되어 있다. 나호드카호 사고는 비교적 기존 어업관리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제기금에 대한 전체 보상청구액의 73%(188백만 파운드의 청구금액 중 137백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다만, 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35%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수령했다(관광은 47%).

한편 어업 등 해양·수산의 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유럽과 같은 국가의 경우에도 사정율이 높지는 않다(에리카 사고는 33%, 프리스티지 사고의 민간분야는 7.5%).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실제보상율이 16%에 그치고 있다.

1999년 12월 12일, 에리카 호 사고

① 사고 개요

1999년 12월 12일 프랑스 남부 브레스트 해안에서 남동쪽 110km 떨어진 해상에서 벙커 씨유 31,000톤을 적재하고 프랑스 뒤네르케 항(Dunerque)에서 이태리 리보르노항(Livomo)으로 향하던 에리카 호(Erika, 총톤수 19,666톤, 몰타 선적)는 비스케이만에서 거친 해상기상(풍속 8~9m/sec, 파고 6m)을 만났다. 이후 선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해 오전 6시경 선체 파손이 일어났고 적재되어 있던 중유 약 19,800여 톤이 유출되게 되었다.

당시 선수부에는 6,300여 톤, 선미부에는 8,300여 톤의 유류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선수부는 사고 후 몇 시간 동안 표류하다 수심 100m 해저에 침몰하고, 선미부는 프랑스 구난회사에서 예인선과 예인색을 연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해안 쪽으로 예인 중 선수부와 18km 떨어진 수심 130m 해저에 침몰하고 말았다. 초기 유출유 탐색은 프랑스 민간 및 해군 항공기로 실시했는데, 약 3,000톤으로 추정되는 15km 길이의 기름띠가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기름띠를 형성, 부유하면서 북서풍의 영향으로 남동쪽으로 이동해 결국 프랑스 남부 해안 약 400km 정도가 오염되었다. 약 65,000여 마리의 바다오리와 같은 야생조류가 기름에 오염되었고, 그 중 50,000여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유출 유는 수많은 요트장으로 유입되어 요트 및 계류장을 오염시켰고 굴·홍합 양식장과 관광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바이에 데 부르뉴(Baie de Bourgneuf)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사고 후 기상악화로 12월 12일부터 19일 동안 해상방제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이후 해상기상상태가 양호해지면서 12월 20일 또는 25일 사이에 국가방제기본계획의 책임기관인 브레스트 해군 해역사에서 방제작업을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해상방제작업에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총 8척의 방제선을 지원해 1,100여 톤의 해상 유출유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분산처리에는 유출유의 점도가 너무 높아 유처리제 사용에 제한을 받았고 거친 해상상태로 유회수기에 의한 기름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12월 24일부터 해안의 방제작업이 개시되었다. 오염의 영향을 받은 해안을 관할하는 5개의 지방정부가 각각 책임지역별로 방제작업을 진행했고, 5,000여 명의 방제인력이 동원되었다. 해안의 방제작업은 주로 수작업 및 기계적 회수를 병행해 2000년 2월초까지 비교적 큰 기름군의 제거가 완료되었고 이후는 2차 방제작업이 진행되어 총 12만 톤의 기름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었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프랑스 정부는 유류오염으로 인한 총 손해액이 국제기금(IOPC Fund)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한정된 보상기금을 우선 민간손해배상 청구에 배당하기 위해 정부가 가진 방제비 청구권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후순위 청구결정(SLQ)을 선언했다.

또한 국제기금이 승인한 피해 사정액 범위 내에서 수산업, 제염업, 관광업계 피해자들에게 긴급 선보상을 해주면서 이들이 가진 청구권을 양도받았는데, 향후 국제기금의 보상금 지급률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긴급보상액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다(2000년 50%, 2001년 80% 및 2003년 100%). 또한 국제기금은 2005년 12월 기름제거 비용으로 지출된 정부 비용 중 일부(1,500만 유로)를 지급했다. 2010년 9월까지 총 7,131건의 보상청구 중 6,955건이 사정 완료되었으며 보상청구액은 약 3억 8천 9백만 유로(6,028억 원), 보상액은 1억 3천만 유로(2,010억 원)로 결정되었다.

한편, 사고 직후 TOTAL SA사(화주)는 방제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200백만 유로(약 3,100억 원) 및 인력 800명을 지원하고 청구인들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비용 전부를 민간에 비해 후순위 채권으로 선언했다. 또한 자발적 배상금으로 약 1억 7천 1백만 유로(약 2,740억 원)를 납부하고, 관광분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광고에도 4.7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④ 사고 후 영향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채택 당시에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최대 1억 3,500만 SDR을 한도액으로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나, 이 한도액으로는 나호드카호(Nahkodka) 사고, 에리카호(Erika) 사고, 프레스티지호(Prestage) 사고 등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전액 보상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는 에리카호 사고 후인 2000년 10월에 법률위원회를 소집해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배상한도액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각각 50%씩 인상하는 개정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선박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5,970만 SDR에서 8,977만 SDR로, 1992년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1억 3,500만 SDR에서 2억 300만 SDR로 확대되었고, 이 개정의정서는 2003년 1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개정과는 별도로 에리카 패키지 I , II를 발표했다.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의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의 총액이 국제해사기구협약(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반대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서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2년 11월 프레스티지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 사고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선박의 안전부문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협약에서는 최소한 보상한도가 10억 SDR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5월 1일 국제해사기구는 '1992년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설립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개정의정서'를 채택했다.

⑤ 시사점

「1992년 민사책임협약」의 배상한도액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나호드카호(Nahkodka) 사고, 에리카호(Erika) 사고, 프레스티지호(Prestage) 사고 등 재난급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했다.

2002년 11월 13일, 프레스티지 호 사고

① 사고 개요

2002년 11월 13일 스페인 갈리시아 해안에서 바하마선적 유조선 프레스티지호(42,820톤)가 침몰해 63,000톤의 유류가 유출되어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이 유류오염피해를 입었다. 1976년 일본에서 건조된 프레스티지호는 그리스 마레 쉬핑사에서 운영하고 러시아 알파그룹에서 용선 중이던 유조선으로 미국 선급협회에서 항해 감항성 적합 판정을 받고 운항 중이었으며, 영국에서 선적을 하고 싱가포르로 가던 중이었는데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법적 책임소재를 놓고 관련 국가들 사이에 많은 공방이 발생했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사고 직후 프레스티지호는 두 동강이 나, 사고 발생 5일 후인 11월 19일 수심 3,500m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사고로 다양한 종류의 바다 조류와 조개, 산호초 등이 서식하는 갈라시아 해변은 큰 피해를 입었다. 타르 덩어리들이 200km에 이르는 피해 해역 주변을 오염시켰으며, 20여 종의 바닷새가 죽고 수많은 어패류와 해초류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갈라시아 지방의 경찰, 군인, 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꾸려진 방제조직은 대대적인 오염 방지 및 청소 작업과 함께 해당수역의 보상액 산정을 위해 오염의 규모와 파장을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사고 발생 후, 스페인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재정기금을 마련하고 지정국영보험회사가 국제기금 보상체계에 따라 손해사정을 실시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시도했다.

그런 뒤에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보상금을 국제기금 등에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프레스티지호는 선주상호책임보험에 가입된 선박으로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액은 22,777,986유로(현 환율로 약 317억 원), 국제기금 협약상 국제기금의 보상한도는 171,520,703유로(현 환율로 약 2,386억 원)였다.

한편 프레스티지호의 선급협회인 미국 선급협회(ABS)에 대한 구상소송에서 미국 뉴욕 1심법원은 선급협회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3조 제4항에 의해 선주의 피용자 또는 대리인 등에 해당되므로 책임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해 프랑스 에리카호 사고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국법원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스페인에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뉴욕 1심법원이 소송에 대해 관할권을 인정하고 스페인의 청구를 기각하자 스페인은 다시 항소했다.

④ 사고 후 영향

스페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먼저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전통적인 방식인 국제기금에 대한 개별청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 정부와 채권양도계약 후 피해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상금액은 스페인 국영 비영리 보험회사(Consorcio)에서 1992년 국제기금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기준으로 정했다.

스페인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어민들에게는 피해기간, 어선척수, 생산량, 선원 수, 선박크기 등을 고려한 표준손해산정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산정한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아 신속하게 보상을 완료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특별법에 의한 보상방법을 선호했고 신청자들 대부분은 거의 2년 내에 보상을 받았다. 정부는 또한 칙령 1699/200에서 조업금지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및 수산업협동조합들도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해는 객관적 산정방식을 적용해 배상했다. 또 관광업 주민들에게는 표준손해산정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별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전문손해사정인을 두고 사정을 통해 보상했고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지출한 방제비용 등에 대해서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은 2003년 12월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2003년 특별법과 2003년 12월 이후 어획량 또는 양식 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2004년 특별법으로 구분되며, 이들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정한 칙령을 별도로 공포했다.

⑤ 시사점

프레스티지호 사고는 국제기금으로부터 낮은 보상율을 보였다.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지급 했을 때, 경우에 따라 국제기금 측에서는 해결된 과제로 인식하고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페인 정부가 적극적인 대지급을 통해 피해보상은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청구금 과다로 스페인 정부와 민간과의 소송, 정부와 국제기금와의 대위청구권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선지급을 할 경우, 지원금이 보상의 일부가 아닌 단지 선지급금이라는 사실을 국제기금에 알릴 필요가 있다.

1995년 7월 23일, 씨프린스 호 사고

① 사고 개요

1995년 7월 23일 전라남도 여수 해역에서 씨프린스 호가 좌초되어 기름 5,035톤을 유출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씨프린스 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스 타누라항(Ras Tanura)과 오만의 미나 알 파할항(Mina Al Fahal) 등 중동의 여러 원유 수출국으로부터 원유를 적재한 후 약 50일에 걸쳐 말라카 해협과 남지나해를 거쳐 한국의 여수 삼일항의 호남정유 원유부두까지 운항하는 초대형 원유 운송선이었다.

여수항에 입항할 당시에는 265,518톤을 선적해서 들어왔으나 호남정유 부두에서 178,631톤을 양륙해 사고 당시에는 86,886톤의 원유를 선적하고 있었고, 연료로 벙커 A유 100톤 및 벙커 C유 1,395톤 등 총 88,381톤의 기름이 적재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씨 프린스 호는 태풍을 피하기 위해 원유부두를 출항해 이동 중 태풍 피항 시기의 지연, 너울이나 바람과 같은 외력의 영향, 초대형선박의 운항조종의 미숙, 태풍이동 진로의 급격한 좌전향 등이 원인이 되어 소리도 인근에서 좌초되었다.

이 사고로 원유가 적재되어 있던 6개의 탱크 중 2개의 탱크가 파손되었고 유출된 기름은 원유 4,155톤, 연료유로 벙커 A유 100톤과 벙커 C유 780톤 등 총 5,035톤이었다. 주변 해역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유출된 기름이 동쪽 및 동북쪽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오일펜스는 7월 25일 15시 30분에서야 처음으로 설치가 가능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기름이 확산된 해안선은 전남 여천군 돌산읍 해안 약 46.923km, 거제도·남해·욕지도 해안 약 10.6km, 부산 해운대·송도·청사포 해안 약 0.9km, 부산·경남지역 13개 마을 26.3km 등 총 연장 73.2km에 이를 정도였다.

② 구난 및 방제작업

사고발생 후 여수해양경찰서는 화재진압을 비롯한 해난구조활동과 함께 방제작업을 개시했다. 확산된 기름의 방제작업은 전국 127개 해양경찰서의 해양오염

관리과 직원을 총동원하고 주민의 소형어선 등을 이용해 유화제살포, 유흡착포 사용 등으로 민관합동 방제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유회수기 26대를 동원하여 회수한 기름이 900여 톤이었고 총 717톤의 유처리제 살포 및 다량의 유흡착포 등을 사용해 회수된 기름의 총량은 약 1,390톤에 이르렀다.

③ 손해배상 및 방제비용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2년의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되는 사고로 대부분의 피해는 3년 내에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최종 보상까지 8년이 소요되었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실사를 의뢰받은 고려검정과 어민들로부터 일괄적으로 피해신고를 받은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1995년 7월 29일부터 1996년 2월 8일까지 현지 피해실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어민과 피해신고 금액을 조정하는 협의를 거쳐 사고 후 16개월이 지난 1996년 11월 20일에 국제기금에 735억여 원의 피해청구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선주는 1996년 2월 8일 선주책임 제한절차 개시신청 후 공탁명령과 제한절차 개시결정, 채권신고마감, 채권신고조사를 거쳐 1998년 6월 2일 법원은 피해액을 153억 원으로 사정했다. 피해자 측 및 국제기금 측에서 법원의 사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이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보상금액은 어민에게 198억여 원, 관광업 등 비 어업 종사자들에게 5억여 원, 방제보상 등에 대해 207억여 원 등 총 502억 2700만 원으로, 선주보험사가 183억 800만 원, 국제기금이 319억 19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④ 사고 후 영향

씨프린스 호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던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유류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과 동시에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법과 정책 및 제도를 정비하가 시작했다.

해양오염방지법(현재의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해상방제업무의 현장지휘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제지휘체계를 구축했다. 또 해양오염대책위원회 및 방제기술지원단 설치, 해양오염방제조합(현재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신설,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방제선 및 방제장비배치의무,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의무수행제도 등을 도입했다.

1999년 11월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해 2002년 2월에 국내에 발효되었다. 또 연안 해역을 통항하는 유조선의 안전항로를 설정해 전용항로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⑤ 시사점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필요는 더욱 커졌다.

1993년 9월, 제5 금동호 사고

’69 민사책임협약과 ’71 국제기금협약이 적용되었던 1993년 9월의 금동호 사고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2004년 4월에 내려졌고 따라서 최종보상까지 10년이 넘게 소요되었다.

보상이 장기화된 이유는 무면허, 무허가 어업의 보상청구에 대해 국제기금 측이 이를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피해자 측은 이에 불복하여 지루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청구가 많았던 점도 보상이 장기화가 된 이유다. 제5 금동호 사고에서는 916억여 원을 청구했지만 선주보험사로부터 6천5백만 원, 국제기금으로부터는 161억 8100만 원만 인정되는데 그쳤다.

국내외 주요 유류오염사고의 비교

사고 선박	토리 캐년 (국외)	엑슨 발데즈	나호드카	에리카	씨프린스 (국내)	허베이 스피리트
선적	라이베리아	미국	러시아	몰타	싸이프러스	홍콩
사고 발생 일시	‘67.3	‘89.3	‘96.12	‘99.12	‘95.7	‘07.12
피해 지역	영국 남해안, 프랑스연안	알래스카 남부	일본 시마네현	프랑스 비스케이만	여수, 남해, 거제	충남 태안일대
유류 유출량	30,000톤 추정	38,613톤 (원유비중0.9)	6,200톤	19,800톤	5,035톤	10,900톤
총 피해액	-	34억US달러	152,100,000 SDR	27,860,000 SDR	502억 원	-
기타 사항	해양유류오염 및 손해배상에 대한 관련법, 규정의 미비	선주인 액슨사가 손해액 (34억 달러) 외 징벌적 손해배상액 약5억 달러 추가 부담	국가개입 최소화, 당사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	기름유출에 의한 환경 손해를 인정한 첫 판결임	어가하락, 관광휴업손해 등이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함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기금책임 보상액 초과분은 국가 재정부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 이 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가 시행해야 하는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상황에서는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Ⅰ. 개요

Ⅰ. 개요

1) 목적

이 매뉴얼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충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위기대응 절차 및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함

2) 적용 범위

가. 해양오염사고는 충청남도 관할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근 해역 및 육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적용

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적용되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충청남도의 조치사항에 적용

다.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충청남도 연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

라. 유조선 충돌·좌초, 해양시설 파손 등으로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 Har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 다량 유출되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 소규모 재난 : 지속성기름 30~100㎘ 또는 비지속성기름 100~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지역)
- 중규모 재난 : 지속성기름 100~1,000㎘ 또는 비지속성기름 3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광역)
- 대규모 재난 :
  - 지속성기름 1,000~5,000㎘ 또는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중앙-해경)
  - 지속성기름 5,0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사고(중앙-장관)

마. 소규모 기름 유출의 경우에도 필요시 본 매뉴얼을 준용하여 적용

3) 관련 법규

가. 국내법적 근거

(1) 해양환경관리법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나. 국제 법규

(1) 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협약)

(2)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약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

다. 기타 사항

(1)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2) 국가긴급방제계획

Ⅱ. 해양오염사고 형태 및 위기 대응체계

Ⅱ. 해양오염사고 형태 및 위기 대응체계

1) 해양오염사고 형태

가. 형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규모의 해양오염물질이 유출되거나 양식장 및 발전소 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대규모 기름이 유입되어 어장·양식장, 원자력·화력발전소, 임해공단, 어패류축양장 또는 해양생태계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

나. 원인

■ 대형유조선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원유수송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석유제품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 해양시설에서 해양에 대규모 기름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정유공장의 급유시설(돌핀시설·로딩암 등) 파손
- 원유선 계류부이 또는 해저송유관의 파손
- 정유공장의 저유탱크 또는 송유관의 파손

■ 대형선박에서 해양에 대규모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사고 발생

- 중질유를 연료로 하는 대형화물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중질유를 저장하는 부선의 해난사고로 선체 파손
- HNS(위험·유해물질) 운반선의 좌초·충돌·화재 등으로 인한 선체 파손

2) 해양오염사고의 확산

가. 대형 선박 해난사고 또는 해양시설의 파손사고 발생에 따른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유출
나. 양식장 및 발전소 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위해물질(HNS) 유입
다. 양식장, 해수욕장 및 해안가 등 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 심각
라. 발전소 및 임해산업시설 등 주요 기간산업 시설 가동 중단

3) 위기 경보

가. 위기경보

■ 위기경보 수준

구분	재난 상황 전개	재난 판단	대응 활동
관심 (Blue)	• 대규모 선박 해난사고 또는 해양시설의 파손사고 발생에 따른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유출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 • 재난가능성 예측	• 징후활동 감시 • 사고대응 근무체계 가동 - 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주의 (Yellow)	• 양식장 및 발전소 등 환경민감지역과 해안에 대규모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유입	• 재난가능성 출현	• 협조체제 가동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수산청 사고 초기 대응
경계 (Orange)	• 양식장, 해수욕장 및 해안가 등 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 심각	• 재난가능성 농후	• 대비계획 점검 • 방제대책본부(중앙, 광역, 지역) 설치·가동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연락체계 유지
심각 (Red)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지속성 유류 100㎘, 비지속성 유류 300㎘ 이상 유출) 및 유출된 기름으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대규모 해양오염발생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중앙·광역·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가동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 방제대책본부 중심의 사고 대응·수습활동 전개

* 단, 위기발령기준은 위기경보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

4) 위기관리 체계

가. 국가재난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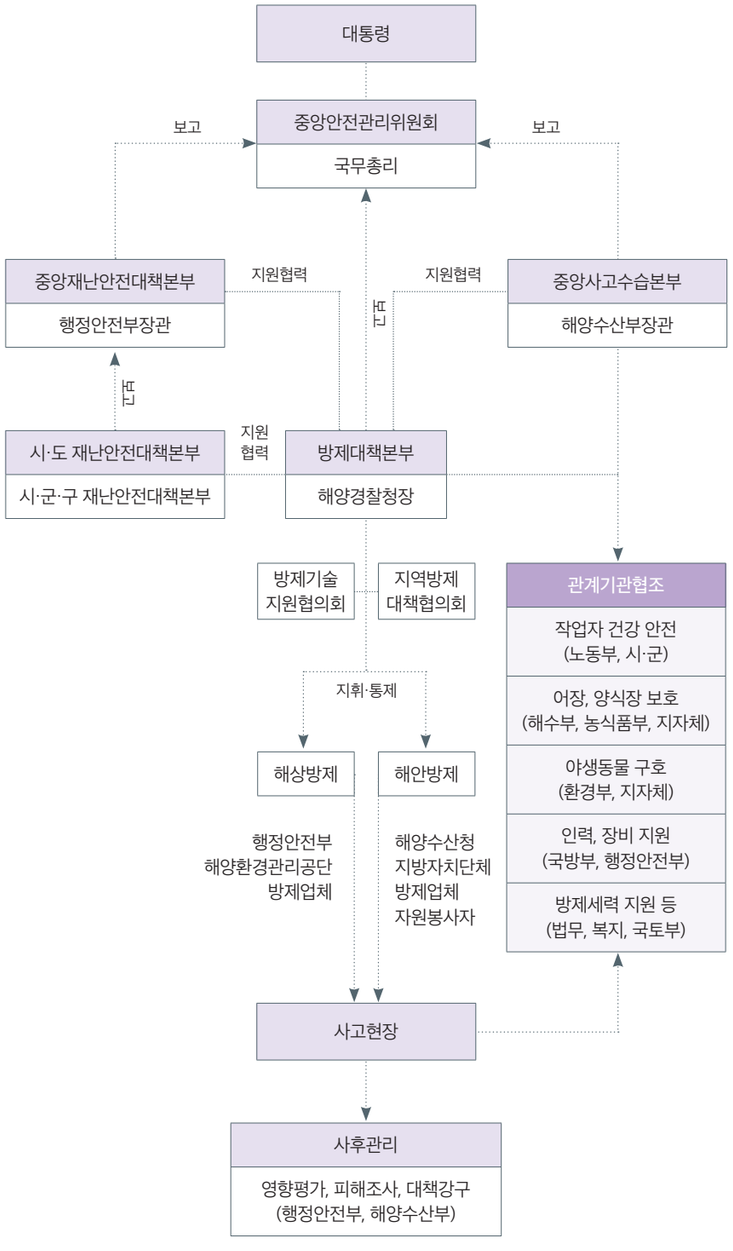

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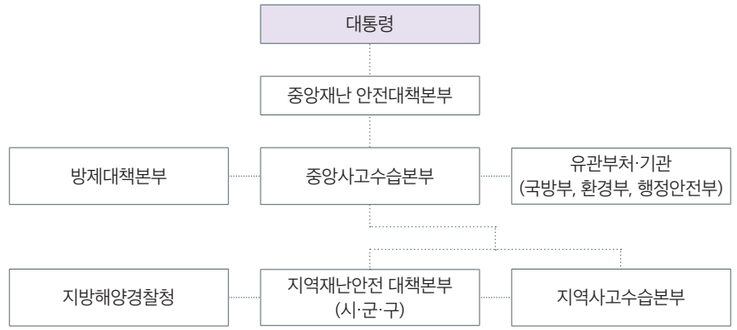

다. 해양오염사고 시 기관별 업무

구분	기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 재난관리에 중요정책 심의 및 조정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심의 • 중앙행정기관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제대책본부 (행정안전부)	•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현장 파견 • 오염사고의 분석평가 및 방제 •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방지 대책 • 인접국가간 방제 지원 및 협력 • 동원된 방제자원 지휘·통제, 방제조치 의사결정 • 방제조치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전파 • 방제대책본부 소관 국가안보실 등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 방제대책본부 소관 해양오염사고 수습에 관한 조정 및 언론 대응 • 방제대책본부 소관 해양오염방제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의
중앙사고 수습본부 (해양수산부)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 • 피해지역 주민 지원 대책 강구 • 오염지역 피해조사 및 보상 지원 • 오염지역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환경 복원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지자체)	• 해당 관할지역내 오염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해안 부착유 방제 및 어장·양식장 보호 • 야생동물 보호 및 구호 • 자원봉사자 관리, 보건 및 의료지원
지방사고 수습본부 (지방해양수산청)	•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제대책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5) 충청남도의 임무 및 대응체계

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임무

사전대비 단계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해안오염 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초동조치 단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추진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가동 준비

▼

중수본·중대본 설치 단계
- 유류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괄할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방제 실시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및 어장피해증거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개 조치 및 피해 양식시설 철거
- 야생동물 보호대책 및 현장 의료지원 및 해안방제 작업자 관리
- 피해해역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통제
-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 교육·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협조요청사항 지원

나. 충청남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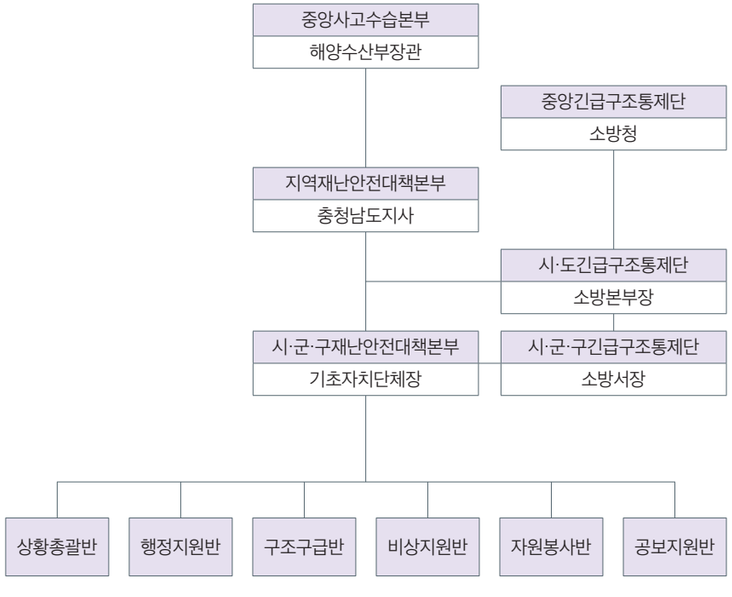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요청하거나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충청남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반별 임무 및 역할

구분	임무 및 역할
상황총괄반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입력 • 재난진행상황 파악, 전달, 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 상황판단 회의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 현장상황관리반 및 중앙수습지원단 활동 지원 • 특별지시사항 처리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행정지원반	• 주요인사 방문 의전, 상황근무명령, 복무단속 및 행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조구급반	• 구조·구급 총괄 및 기타 구조·구급에 필요한 사항
비상지원반	• 응급복구, 민방위대, 군·경 협조 및 기타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 운영 • 부상자 의료지원,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 의료기동반 및 의료방역반 편성 운영
자원봉사지원반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공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기타 공보지원에 필요한 사항

Ⅲ. 해양오염사고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

Ⅲ. 해양오염사고 위기 단계별 대응조치

1) 해양오염사고 접수 및 응급조치

가. 사고 접수

행위자 또는 사고 목격자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신고접수 내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원인
- 배출된 기름의 확산상태 및 추정량
- 사고선이나 시설의 종류, 명칭 및 규모
- 해상 기상의 상태 및 응급 조치 사항
- 신고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전파

※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유·무선(SNS 포함)으로 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나. 응급조치

■ 응급조치

- 지역통제단장과 시·군·구청장은 재난시 수방, 진화, 구조, 구난,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시설복구, 방역, 긴급구조 및 수송,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대피명령·위험구역의 설정·강제대피·통행제한

-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대피명령) 해당지역의 주민, 선박, 자동차 등에 대한 대피명령
  ② (위험구역 설정) 필요시 위험구역의 설정, 출입제한 등의 조치
  ③ (강제대피) 대피명령의 불이행이나 위급성이 판단되면 위험구역안의 주민을 강제대피 및 퇴거조치, 관할 경찰서장의 지원 요청
  ④ (통행제한) 응급조치를 위한 물자의 수송, 구조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의 통행금지 등 요청

■ 시·도지사의 응급조치

- 재난시 대피명령, 위험구역설정, 강제대피, 통행제한 등 조치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응급조치

- 재난시 소관업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2) 위기 단계별 충청남도의 대응조치

관심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인지
징후	• 해양오염사고 발생가능성 인지(재난가능성 예측) • 대형유조선 충돌, 침몰, 좌초사고 및 해양시설 파손

가. 기관별 임무·역할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확인 • 위기징후 감시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해양경찰청	• VTS 24시간 운영 • 국가방제능력(방제선 및 방제장비 등) 점검 •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정보 관리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지휘·통신망 및 오염사고 신고접수 및 전파체계 구축 • 위기징후 감시·평가 및 위기경보 수준 평가회의 개최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지자체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소속공무원의 방제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해안오염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보호구 등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해양환경 관리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 전문방제교육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방제교육·훈련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나. 충청남도 대응 조치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위기상황 접수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해안방제를 위한 체계 준비

■ 해안방제 지원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편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해안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안방제 기자재 수량 확인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확보

- 수량 확인 후 부족 시 기자재 확보 계획 수립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자재배급 계획 수립

사고 인근해역 어업현황 파악

■ 사고 인근해역 어민과 어선 대피

- 조업 여부 확인 후 대피 안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해양오염사고 시 어민 및 수산업 피해 현황 파악

주의	기름유출 사고발생
징후	• 기름유출 사고발생(재난가능성 출현)

가. 기관별 임무·역할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 위기징후 감시 및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 전파
해양경찰청	•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관제시스템 24시간 운영 • 위기징후 감시·평가 • 방제 자원 등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 체제 강화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지자체	• 해안방제 지원체제 구축 • 해안오염방제를 위한 기자재 확보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보호구 등 확보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필요시)
해양환경 관리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나. 충청남도 대응 조치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위기상황 접수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해안방제를 위한 체계 준비

■ 해안방제 지원체계 구축

- '종합상황실' 설치 및 근무자 편성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해안방제를 위한 기자재 및 보호장비 확보

- 해안방제 기자재 수량 확인
-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개인 보호장비 확보

■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자재배급 계획 수립

사고 인근해역 어업현황 파악

■ 사고 인근해역 어업현황 파악

- 조업 여부 확인 후 대피 지도
- 해양오염사고 시 어업 피해 현황 파악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경계	유출된 기름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 확산 우려
징후	• 유출된 기름 어장, 양식장 및 연안지역까지 확산 우려(재난가능성 농후)

가. 기관별 임무·역할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상황실 24시간 운영 • 해상교통상황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체제 구축 •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해양경찰청	• 방제대책본부 운영체제 구축 • 위기징후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 • 유관기관 공조 및 방제대응 협조체제 유지 • 긴급방제장비의 동원 및 방제 인력 운용 체제 유지

구분	내용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확보
해양환경 관리공단	• 방제선·방제장비·자재 확보 및 배치
항만공사	•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확보
지자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해안오염방제 기자재·보호구 확보 •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 추진 • 해양오염사고 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자원봉사자 관리·지원체계 구축

나. 충청남도 대응 조치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 위기상황 접수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해안방제 조치

- 해안방제 기자재 공급
- 해안방제 보호장비 공급
- 해안방제 작업자 관리

■ 피해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통제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통제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 요청사항 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후 총력 대응

심각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
징후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지속성 유류 100㎘, 비지속성 유류 300㎘ 이상 유출) 및 유출된 기름으로 해안가 100km이상 오염 발생(재난가능성 확실)

가. 기관별 임무·역할

구분	내용
해양수산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검토, 현장상황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본부 구성 검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요청 검토 • 현장상황 및 위기 진행 관련 언론 대응 총괄
해양경찰청	• 방제대책본부 운영 • 사고 초동조치(유출량 파악, 유출방지,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및 중대본, 중수본 상황전파체계 유지
지방해양수산청	• 항만별 해양오염 방제 기자재 동원태세 유지
지자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주민 대피명령, 육상 위험구역 설정, 통행제안, 응급조치 실시(필요시)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해안방제 조치 • 해안방제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해안방제 작업자 관리 • 해안방제 종료 선언(필요시 협의체 구성)
해양환경관리공단	• 행정안전부, 지자체 요청·지시에 따른 방제조치 지원 • 지자체의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지원 및 민간방제조직의 방제조치 지도 • 해상·해안 방제작업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지원
항만공사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항만시설(관리·운영)방제 실시 • 항만시설(관리·운영) 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나. 충청남도 대응 조치

위기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접수 및 전파
  • 지방해양수산청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

■ 주민 대피명령, 육상 위험구역 설정
  • 사고 해역 내 주민과 어선 대피 명령
  • 육상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제한 조치 실시

오염방지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해안방제 조치
  • 해안방제 기자재, 보호장비 공급
  • 해안방제 작업자 관리

■ 피해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통제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유통통제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기물 처리
  • 2차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조 요청사항 지원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후 총력 대응

피해 어업인을 위한 조치

■ 사고 해역 어업현황 파악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제 구축 후 총력 대응우심해역 어업현황 파악
  • 어장피해 증거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방제상황에 따라 어업재개 조치 및 피해 양식시설 철거
  • 방제대책본부와 협의 후 어업재개 여부 결정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양식시설 철거

자원봉사자 관리

■ 해안방제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 자원봉사자센터 설치·운영
  • 자원봉사자 현장 안전교육·의료지원 및 관리

3) 단계별 대응 절차

가. 해양오염사고 방제활동 흐름도



나.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단계별 대응절차

절차	조치 사항	담당
상황파악·전파	○ **오염사고 상황 접수** **< 사고내용 파악 >** • 사고 발생 일시, 장소, 개요, 기상 상태 • 선박(시설)의 명칭, 제원(선종, 총톤수, 기름 적재량) • 사고의 형태(침몰, 좌초, 충돌, 파공, 화재 등) • 기름유출정도(유출량, 유종, 범위, 색깔 등) • 계속 유출가능성, 주변 피해여부	민원인으로부터 신고 접수
	○ **보고 및 전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양경찰청 신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 충청남도청 내부 보고 → 10분 이내	재난관리 담당자
초동조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후 반별 업무 실행	재난관리 책임자
	○ **사고 해역 주민 대피 명령** • 사고 해역 인근 어선 대피 명령 • 사고 해역 통행제한 조치 실시 • 육상 위험구역 설정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재난관리 책임자
	○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조치** • 사고 인근 해역 어장, 양식장 등 어업 현황 확인 • 조업제한 및 수산물 유통제한 • 주변 민감자원 보호 조치 실시	재난관리 책임자
초동조치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협력대응 체제 유지	재난관리 책임자
	○ **해안방제 기자재 점검 및 방제 준비** •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해안방제를 위한 기자재 수량 확인 • 해안방제를 위한 보호장비 확보 • 방제기자재 수량 확인 후 부족 시 기자재 확보 계획 수립 • 방제인력 방제·안전교육 실시 • 방제기자재 배급 계획 수립	재난관리 책임자
	○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수립 •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및 지역별 인력관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방제전략·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제대책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 방제대책회의를 통해 방제전략 공유 및 실행 협의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해안방제 실시** • 지역별 방제인원 배치 • 방제 기자재 보급 및 보호장비 배급 • 방제방법 교육 및 안전 관리 • 방제전문가로부터 방제방법 자문 • 지역 어민 등으로부터 사고 현장 특성 청취 후 방제계획 업데이트 • 지역별 방제 상황 관리 및 감독 ※ 오염사고 현장 평가서 작성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 • 방제현장 지원 및 관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 • 자원봉사센터 설치 후 자원봉사자 배치 및 안전 관리 • 자원봉사자 장비 및 편의 제공 지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시설물 처리** •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피해 어민 보호를 위한 조치** • 어장피해 증거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피해 배·보상 제도 교육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환경보호 대책 수립 및 실행** • 야생동물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 환경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조치 실행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어업재개 조치 및 피해 양식시설 철거** - 방제대책본부와 협의 후 어업재개 조치 및 피해 양식시설 철거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정보제공	•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제공** • 오염물질의 안전·보건 등 정보 제공(언론사 등) • 민간 등 방제작업자의 활동 사항 • 방제작업자의 안전교육 이행 사항 검토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기관 협력 및 국제 협력	○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협력** •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오염사고 상황 전파 • 국가긴급계획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여 전파 •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지원 검토/요청 - 인력, 차량, 방제 기자재, 폐유·폐시설물 처리 등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지원 협조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절차	조치 사항	담당
기관 협력 및 국제 협력	○ **국제기관과의 협력** • NOWPAP, UN 등 국제기관의 방제기자재 및 기술지원시 응대 및 지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언론 대응	○ **언론보도 대응** • 해양오염사고 조치사항 보도안 작성, 배포 • 언론사 동향 파악 및 대응 - 취재지원, 인터뷰, 왜곡보도 사항 정정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언론담당자
피해 파악	○ **피해사항 파악** • 어장, 양식장, 임해시설 등 피해사항 기록 유지 • 피해사항 관계기관 전파·확인 • 피해지역의 주민 및 환경단체 동향 파악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자료 작성	○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전파** • 보고서 작성 - 사고개요, 주요조치, 피해사항, 언론보도, 향후전망 등 - 어장·양식장 및 주요 임해시설 현황 파악 - 방제대책회의 결과 - 방제인원, 방제지역, 방제활동 결과 - 방제자원 투입 현황 - 수거된 폐유·폐시설 현황 ※ 전반적인 방제조치 사항, 언론, 피해, 향후 계획(전망)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방제 완료 검토	○ **방제완료 검토** • 유류오염 현황 분석, 방제 결과 등을 조사·분석해 방제대책본부, 보험사,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결정	재난관리책임자

다. 해양오염사고 시 충청남도 상황처리 체크리스트

연번	확인할 사항
1	**(상황파악)** 해양오염사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 사고발생 일시, 장소, 원인 파악 • 선박(시설)의 명칭, 규모(선종, 총톤수, 적재량), 소유자 등 • 사고의 형태(충돌, 좌초, 침몰, 파공, 기타 등) • 사고형태에 대한 구체적 상황 파악 ※ 침몰깊이, 파공크기·위치, 좌초 형태 등
2	**(신고전파)**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고·전파하였는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해양경찰청 신고 • 충청남도 내부 상황 보고 • 유관기관(해양환경관리공단, 기초자치단체 등)에 상황 전파
3	**(초동조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 사고 해역 인근 어선 대피 명령 • 사고 해역 통행제한 조치 실시 • 육상 위험구역 설정을 통한 위험요인 제거 • 사고 인근 해역 어장, 양식장 등 어업 현황 확인 • 조업제안 및 수산물 유통제한 고려 • 사고 인근 민감자원 보호 조치 실시
4	**(대책본부)** 사고 수습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는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반별 업무 분장과 업무 체계 검토 - 방제대책본부와의 협력 체계 유지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 대응
5	**(방제준비)** 해안방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는가? • 해안별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수집 • 해안방제를 위한 기자재 수량 확인 • 해안방제를 위한 보호장비 확보 • 방제인력 방제·안전교육 실시 • 방제기자재 배급 준비 •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방제업체 동원현황 확인 - 동원 인력, 시간, 선박명, 방제기자재, 배치장소 등
6	**(인력관리)**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완료했는가?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계획 수립 • 자원봉사자 배치 계획 및 해안별 인력 관리
7	**(협력체계)**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제대책본부와의 협력이 원활한가?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력 체계 유지 • 방제대책본부 방제대책회의 참여 및 방제전략 협의
8	**(방제실시)** 해안방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 관리·감독 • 지역별 방제인원 배치 • 방제 기자재 보급 및 보호장비 배급 • 방제방법 교육 및 안전관리 • 해안별 방제 상황 관리 및 감독
9	**(현장관리)** 재난현장 지원·관리가 원활한가? •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 재난현장 지원 및 현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유지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자원봉사자 배치 및 인력 관리 - 자원봉사자 보호장비 및 편의제공 지원
10	**(피해예방)**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였는가? • 해안방제 시 수거된 폐유·폐시설물 처리 • 환경민감해역 보호를 위한 조치 • 야생동물 보호대책 수립 및 지원
11	**(피해어민 보호)** 피해어민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가? • 어장피해 증거수집 지도 및 양식어업인 교육 • 피해 배·보상 제도 교육 • 방제 진행 현황에 따른 어업재개 조치 고려
12	**(언론대응)** 해양오염사고 언론 대응이 원활한가? • 언론사에 지속적인 자료 제공 • 취재지원, 인터뷰, 왜곡보도 정정 • 환경단체 및 주민동향을 파악하였는가?
13	**(피해파악)** 피해사항을 취합,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 • 주민 피해, 환경 피해 등 기록 취합 - 증거 및 자료 확보 • 피해사항 관련기관 통보

허베이 특별법(약칭: 허베이호법)
&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허베이호법)

[시행 2013.7.23.] [법률 제11811호, 2013.5.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보험자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6. 국제기금협약이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7. 국제기금이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8. 손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의 유류오염손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13.5.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⑥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7.>

1. 제2조제3호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8조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10조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11조의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12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 선박소유자(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험자 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8조(손해보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자, 국제기금 또는 피해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지급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代位) 행사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자에게 대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부 등의 지원수준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수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자가 없는 경우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면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은 있으나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은 책임협약 및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1.5.19.>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2.]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해양·해저 등의 복원계획

4.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5.22.>

1.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

4.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9.5.27.]

제11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11조의3(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른 면허·허가 및 신고 어업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법률 제8898호, 2008.3.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지원한 부분은 이 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739호, 2009.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40호, 2009.5.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선박을 각각 유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4호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을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77호, 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및 제1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2명을 1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각각을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11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허베이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 허베이호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제3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7.2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13.7.22.>

제6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제7조(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고, 그 단체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구성원 명부

3.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복수의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대책위원회·조정위원회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전체의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2. 광역시·도 : 시·군·구별 피해주민단체 대표자 1명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피해주민단체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별 피해주민단체에 대하여 단일화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주민단체의 단일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7.22.>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기금등 또는 법원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2.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3. 대지급금신청인이 국제기금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등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의 존재 여부

④ 대지급금의 지급 수준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대책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3.7.22.>

제9조(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국제기금등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순위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대부 신청)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 <개정 2010.1.11.>

제13조(대부 결정)

① 대책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대부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해주민의 소득, 생활 상태 및 피해 규모

2. 손해배상 또는 보상 청구에 대한 국제기금등의 사정의 진행 정도

3. 그 밖에 대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대부금 관리)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1.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지원금

3. 대지급금

4.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

5.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금과 대부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계한 사실을 지급받게 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에게 1년 이내의 상환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상환기한에 대부금을 상환하면 대부를 받은 자의 생계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의 소에 따른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22., 2015.1.16.>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상환기한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 결정일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금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등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8.]

제15조(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한도초과 보상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자는 한도초과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대책위원회는 국제기금등의 사정 진행 상황과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의 예상규모를 고려하여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③ 한도초과 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7.22.>

제16조(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대지급금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에서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한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본다.

제17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의 목적 또는 사유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3. 지정 일자

4.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하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따라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

제19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및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 내용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7.22.>

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11., 2013.7.22.>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피해주민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2013.7.22.>

1.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제한채권 신고서류 사본

2. 국제기금등이 통보한 손해액의 사정 결과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③ 삭제 <2010.1.11.>

④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1.11., 2013.7.22.>

[제목개정 2010.1.11.]

제20조의2(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사후관리

2. 질병(암을 포함한다)의 조기 검진, 처방 및 관리

3. 구강건강 관리

4. 영양관리 및 건강상담

5.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6.]

제20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18.>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3.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

4. 그 밖에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절차, 공고방법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1.16.]

제20조의4(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전 또는 이후에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하였을 것

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였을 것

3. 국제기금등의 사정(査定)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것

② 법 제11조의3에 따른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의 지원범위는 어업제한 등의 기간, 해당 어업의 평균매출액, 국제기금등의 사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손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내역에 관한 서류

3.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그 밖에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의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손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16.]

제21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주민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협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금의 입출금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및 정산 또는 대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의3에 따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0.8.]

부칙 <대통령령 제20821호, 2008.6.13.>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89호, 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6>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48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 중 그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되는 상환기한을 새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특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한 및 연장된 상환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면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산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8호, 2011.11.16.>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32호, 2012.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으로 소집한다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제4항 중 공동으로 정한다를 각각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 신청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청인란 및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72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원단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55호, 201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 상환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7월 16일 이후 개별 제한채권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의 대부금 상환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18.>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388>까지 생략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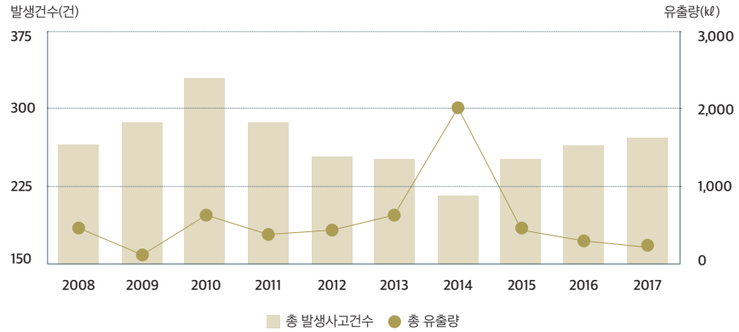

출처 : 해양경찰청(내부행정자료)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발생 건수	계	329	287	253	252	215	250	264	271
	유조선	37	25	32	12	30	25	24	22
	화물선	33	39	48	26	21	21	34	25
	어선	140	97	66	77	54	91	109	115
	기타	119	126	107	137	110	113	97	109
유출량	계	601	369	419	635	2001	464	278	230
	조선	149	1	1	3	38	10	2	89
	화유물선	82	60	222	439	786	121	49	2
	어선	1312	52	6	18	41	22	26	37
	기타	240	255	190	175	1136	311	201	102

100㎘ 이상 유출사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97	01	03	04	07	09	10	11	12	13	14	15
건수	2	1	2	1	3	1	1	1	1	2	5	2
유출량 [㎘]	1419	328	983	1,200	13,629	253	132	100	115	247	1,836	316

('05년, '06년, '09년도, '16년도, '17년도 100㎘ 이상사고 미발생)

참고문헌

H·S유류사고대책 추진상황 - 기타 지원분야(Ⅱ), 충청남도

H·S유류사고대책 추진상황 - 기타 지원분야(Ⅲ), 충청남도

H·S유류사고대책 추진상황 - 각종 보고 및 건의분야(Ⅰ), 충청남도

H·S유류사고대책 추진상황 - 각종 보고 및 건의분야(Ⅱ), 충청남도

H·S유류사고대책 추진상황 - 각종 보고 및 건의분야(Ⅲ), 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에 따른 생태계 영향 장기 모니터링 - 7차년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2011 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 국토해양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집, 충청남도

서해 해양환경연구센터(가칭)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구상, 충청남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자료 조사 수집 용역, 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부문 백서 -최종보고서(초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건립 기본 구상, 충청남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재판 실무, 사법발전재단

삼성 예인선단-허베이스피리트 충돌·오염사건 심판백서, 국토해양부 해양안전심판원

사람과 자연, 생명의 연대를 위하여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2주년 환경운동연합 활동백서, 환경운동연합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백서, 국토해양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방안 연구용역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피해보상부문),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 II, 태안군

Hebei Spirits호 유류오염사고 피해배상업무 결산,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서산수협유류피해대책위원회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해양환경안전포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참고자료,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

인간띠, 서해안을 살리다 DVD, (주)인디유니온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충청남도의회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빛 정리, 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 기본 구상, 충청남도

함께 살린 바다 희망으로 돌아오다, 충청남도

도정백서, 충청남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전사례집 ,32보병사단

사정재판에 관한 보도자료(2013.1.16), 서산지원

허베이 유류오염사고 당시 기관명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자치부

농림부

(사고 당시는 농림부 였으나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었음)

문화체육부

현재 기관명

해양수산부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으나

2013년 3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로 변경)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전보건공단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충청남도지사
기획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펴낸 곳 충청남도
발행 2018년 6월
편집·디자인·인쇄 (주)이팝
촬영 이용기
집필 이원복, 손완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46-01

| 자문위원 |

강길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산업연구실장
권희태 충청남도 전 부지사
국응복 충남유류피대위총연합회 회장
김기대 대화평가법인 이사
김달진 전 태안군 과장
김진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방재본부 차장
문광명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
문승일 충남유류피대위총연합회 사무국장
문정갑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장
박광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원
박덕규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회장
방동갑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장
손석현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팀장
송영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기동방제과 계장
서덕철 전 태안부군수
심원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경환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사무국장
이수민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원재 전 서산수협 조합장
이평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장형석 서산수협 과장
장영숙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처장
전강석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정광섭 충청남도의원
정원옥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류오염연구센터장
정종관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원
진태구 전 태안군수
최민호 충청남도 전 부지사
최진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철환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
홍재표 충남도의회 의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극복 백서